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세부기준

(2023. 1. 1. 제정)

(2025. 12. 17. 개정, 2026. 03. 01. 적용)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절차

- 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보고서와 함께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평가표(「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서식1>」)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 나. 산학협력단장은 직전 회계연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한다.
- 다. 평가점수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3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한다.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점수	상위 70% 이내	상위 70% 초과 ~ 90% 이내	상위 90% 초과
지급률	10%	9.5%	9%

- 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 - 산학협력단 지원금액*) × (지급률)

* 산학협력단 지원금액: 사전제안경비,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등

- 마. '라'에 따른 지급금액을 참여연구원 평가표의 평가점수에 따라 배분하여 개인별 지급액을 결정한다.
※ 개인별 지급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바. 산학협력단장은 '마'에서 결정된 개인별 지급액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연구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한다.

2. 연구개발과제 구분: 연구개발과제는 3개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평가한다.

I 그룹: R&D 인문사회분야(예체능분야 포함)

II 그룹: R&D 이공계 분야

III 그룹: I, II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사업

3. 평가대상: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연구개발과제 평가지표(100%)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 점수(90%) + 해당 연구개발과제 당해 사업비 점수(10%)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	환산점수(점)
100,000,000원 초과	100
100,000,000원 이하	95
90,000,000원 이하	90
80,000,000원 이하	85
70,000,000원 이하	80
60,000,000원 이하	75
50,000,000원 이하	70
40,000,000원 이하	65
30,000,000원 이하	60
20,000,000원 이하	55
10,000,000원 이하	50
9,000,000원 이하	45
8,000,000원 이하	40
7,000,000원 이하	35
6,000,000원 이하	30
5,000,000원 이하	25
4,000,000원 이하	20
3,000,000원 이하	15
2,000,000원 이하	10
1,000,000원 이하	5
0원	0

해당 연구개발과제 당해 사업비	환산점수(점)
500,000,000원 초과	100
500,000,000원 이하	95
400,000,000원 이하	90
300,000,000원 이하	85
200,000,000원 이하	80
100,000,000원 이하	75
90,000,000원 이하	70
80,000,000원 이하	65
70,000,000원 이하	60
60,000,000원 이하	55
50,000,000원 이하	50
40,000,000원 이하	45
30,000,000원 이하	40
20,000,000원 이하	35
10,000,000원 이하	30
-	25
-	20
-	15
-	10
-	5
-	0

5. 예외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작일(연차과제인 경우 해당 연차 시작일)이 2023. 2.28. 이전인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함

※ 총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이 2023. 2.28. 이전이라 하더라도, 2023. 3. 1. 이후 연차가 시작된 연구개발과제는 본 지침 및 세부기준을 적용함.

나. 산학협력단장은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산학협력단장이 지급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동점자 처리기준

가. 연구개발과제 최종 환산점수가 합계가 같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1순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가 큰 경우

2순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당해 사업비가 큰 경우

나. ‘가’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 동순위로 처리한다.

7. 기타

가.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지침」 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및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제 수행 중 이직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과제가 타 기관으로 이관이 되는 경우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연구과제별로 평가한다.

라. 간접비 및 사업비 환산점수는 최종 간접비 금액 및 사업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마. 간접비가 0원인 연구개발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연구기간 종료일(연차과제인 경우 해당 연차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연구종료보고서 및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종료된 과제에 적용한다.